

# 고양교육지원청 학원(독서실) 운영안내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사항 미이행시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 □ 학원 게시사항 및 비치서류

◆ 게시사항: ①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②교습비등계시표, ③학원강사게시표, ④교습비등 반환기준

◆ 비치서류: 학원원칙, 등록관계 서류철,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5년), 수강생대장(3년), 직원명부(영구-사망시까지)

※ 수강생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이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영수증으로 인정

### ※ 학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 ○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2017.1.1.시행)(조례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신설)

- 게시방법: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포함한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
- 서식: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하는 경우 표시사항 추가 [2016.11.30.시행]

- 교습비등(학원법 제15조제3항) 외에 학원등록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표시 추가 (학원법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 □ 학원 운영 중 등록사항의 변경

### ◆ 변경 등록 사항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 교습과정 변경
- 강사명단, 교습비등의 변경
- 학원위치 변경
- 시설·설비변경(실별 용도변경 포함)

### ◆ 변경 통보 사항

- 학원 명칭 변경·원칙 변경(교습과목, 일시수용능력인원, 총이수시간 변경 등), 설립자 개명

## □ 강사의 채용 및 해임

◆ 채용·해임 후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해임 통보

◆ 강사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실시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3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9호
-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외(단, 직업분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실시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자국범죄, 국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모두 실시

☆☆☆반드시 강사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실시

- ◆ 학원운영자도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강사등록 하여야 함
- ◆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 학교교과교습학원: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에서 2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2학년수료증명서)한 재학(제적)생 및 휴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경우는 반드시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외국 대학 졸업자 채용 시 학력검증 철저)
  - 평생직업교육학원: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
- ◆ 채용 및 해임 통보 철저: 미신고 및 누락신고 등으로 강사 인원 다수
- ※ 강사 외 학원에서 채용하거나 파견된 모든 인력(직종, 성별, 근무시간 및 기간 불문)에 대해서도 반드시 채용 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 강사 채용에 따른 준비서류

- ◆ 강사 등록(변경)시 필요서류(채용 후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신고)
  - 강사 채용 또는 해임통보서, 채용시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인터넷발급 3개월내), 재학생: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3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9호
  - 대상 :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취업예정자(강사, 사무직원, 운전원 등)
  - 필요서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해당강사자필), 학원운영등록증명서, 설립자 신분증(설립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소정양식 위임장 지참)
  - 조회기관: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동구: 일산동부경찰서, 서구:일산서부경찰서, 덕양구:고양경찰서)
- ◆ 내국인 강사가 외국대학 졸업시 학력증명서를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 서류 제출
- ◆ 외국인 강사의 등록 시 검증서류
  - 범죄경력조회서(자국+대한민국):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 건강진단서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학력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 여권 및 사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031) 900-2839

## □ 교습비등 등록(변경)

- ◆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책정,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함(기타경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 교습비등 등록 : 학원설립등록 시 작성하고 변경 사항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등록
- ◆ 교습비등 표시제 : 인쇄물 ·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반드시 표시

- ◆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 반드시 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 학원관련 안전사고 예방 철저(학원배상책임보험)

- ◆ 학원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 ◆ **가입기준**
  - 1인당(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구내외치료비) 보상금액 3,000만원 이상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구내치료비 : 학원이 소재한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 구외치료비 : 학원 업무과 관련하여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 ◆ **가입시기**
  - 신규 설립 등록의 경우 :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 설립·운영자 변경의 경우 :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일(신고수리일) 즉시 가입
  -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 가입기간 만료일
- ◆ **보고시기 (보험증권 보장부)**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제출.  
(팩스: [031-907-8093](tel:031-907-8093), 이메일: [gkrdnjs21@korea.kr](mailto:gkrdnjs21@korea.kr) 제출)  
(이메일제목: @@교습소 보험서류, 파일첨부 시 암호 해제하여 송부)  
(보험서류 보장부 (대인 및 치료비 가입금액, 보장기간, 증권번호, 가입일자가 나와있는 서류)는 갱신할 때마다 송부 필)
- ◆ 학원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미갱신, 기준미달가입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
- ◆ 보험증권 미제출 시 교육지원청에서 갱신여부 확인 불가
- ◆ 화재예방 철저: 석유 및 가스난로, 커피포트 등 사용 주의
- ◆ 학원내 (성)폭력관련 사고 미연에 방지 노력: 사건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
- ◆ 학원내 모든 직원(시간제직원, 운전기사 등 포함)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의무화(성범죄경력 미조회시 과태료 대상)

## □ 교습비등 반환기준 준수: 경기도학원조례

- ◆ 학원 사유에 의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 ◆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1/3경과 전 2/3반환, 1/2경과 전 1/2반환, 1/2경과 후 미반환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
- ◆ 게시 및 학습자 또는 학부모요구 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 □ 교습시간 제한알림

- 유·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05:00~22:00 (독서실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제외)
- 제한시간 이후 일절 교습행위 금지 : 자율학습, 보충수업, 첨삭지도, 시험 등
- 학생이 학원 내부에 남아 있는 행위도 교습행위로 간주

## □ 법정연수 실시

- ◆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 경기도학원연합회 위탁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며 설립운영자는 의무 이수하여야 함
- ◆ 강사연수(매년 1회) : 경기도학원연합회 위탁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

## □ 허위·과대광고 금지

- ◆ 학원 명칭을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킨더솔레, ㉠유치원, ㉠프리 스쿨, ㉠평생학습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 광고내용에 100% 취업보장, 100%합격보장, 전국최고 명문학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 ◆ 전국 최고 강사진, 명문대 최고 진학률, 내신적중률 최고(%)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 명문대, 특목고 등 합격생수를 정확한 근거 없이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  
(특히, 본원의 일괄 광고 시 지점이 되는 각각의 학원명 반드시 표시)
- ◆ 어학원에서 내국인의 강의함에도 외국인강사가 직접 강의한다 홍보하는 행위
-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 □ 어린이 대상 통학버스 운영

- ◆ 대상: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 ◆ 통학차량 현황 입력: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http://www.ssif.or.kr/schoolbus>)에 직접입력  
(입력방법: 고양교육청 홈페이지 학원교습소-공지사항-제목 '(학원필독)어린이 통학버스'로 조회)
- ◆ 다음과 같은 경우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에 즉시 **변경** 또는 **삭제** 처리하여야 함
  - 학원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설립자 변경, 학원명 변경, 주소지 변경, 학원 폐원 등)
  - 차량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차량 소유자 또는 동승자 변경, 차량 교체, 차량 미운행 등)
  - 운영자와 운전자가 통학차량 안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스템에 교육이수번호 갱신 요망
- ※ 설립자 변경 또는 폐원 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미운행할 경우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에서도 **삭제** 처리 꼭 해야 함
- ◆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과**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차량에 항상 비치**
  - ☎ 고양경찰서 교통관리계 031)930-5352
  - ☎ 일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031)929-9355 / ☎ 일산서부경찰서 031)839-7355
-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구분	관련 규정	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도로교통법 제52조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의2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보호자 탑승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	○ 어린이통학차량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 ○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
통학차량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와 운전하는 자는 어린이통학차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 - 신규안전교육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운전) 전 - 정기안전교육 : 2년마다 ※ 도로교통안전공단 <a href="http://www.koroad.or.kr">http://www.koroad.or.kr</a> ☎ 02)2230-6114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사항

- ◆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등이 설치된 놀이터. 이동식 완구류는 안전관리 의무이행 대상 아님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의해 **설치자가 설치검사 신청**
-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안전검사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놀이시설팀\(www.kcl.re.kr, 02-2102-2640\)](http://www.kcl.re.kr)

## ☐ 학원의 정보 공개

- ◆ 홈페이지 공개
  - 홈페이지 주소: [나이스\(www.neis.go.kr\)](http://www.neis.go.kr) ⇒ **학원민원서비스** ⇒ 경기도교육청 ⇒ 학원·교습소정보
  - 제공되는 정보 : 『학원법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교습비 및 기타경비,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설립자 및 감사명단, 교습과정, 교습과목 등.
- ◆ 모바일 앱(App) 공개
  -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전국학원정보**』 검색하여 다운로드
  - 제공되는 정보: 홈페이지 공개내용과 동일

## ☐ 옥외 간판

- ◆ 건물 또는 건물 내 토지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광고물등(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 전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간판은 불법 옥외광고물로서 1년에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처분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

- ◆ 학원 운영에 따른 제반 안내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학원·교습소·개인과외안내 → 학원 → 각종서식

## ☐ 문의 및 신고

-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93~6

#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 및 조례 제14조 제1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금액 (학원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관련)

행정처분					과태료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 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무단 위치변경	정 지	말 소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무단 위치변경			
	시설임의 변경	시 정 명 령	정 지		시설임의 변경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말 소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설립·운영자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정 지	말 소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교습비 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 정 명 령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일부 미반환 교습비등 전부 미반환	100	200	300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학원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학원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100	200	300
강사등	무자격 강사·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정 지	말 소		무자격 강사·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100	200	300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시 정 명 령	정 지	말 소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미실시)	50	100	200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말 소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정 지	말 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교습 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시 정 명 령	정 지	말 소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영	허위·그 밖의 부정 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말소			2월이상무단휴원·폐원 미신고 - 1개월 이상 50 - 2개월 이상 100 - 3개월 이상 200 - 6개월 이상 300			
	허위증명발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지	말소		조치결과 미보고 50 조치결과 거짓 보고 70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경우 100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100	100	200	300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 부조리	시정 명령	정지	말소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배상기준 미달 포함) - 10일 이하 30 - 11일 이상 20일 이하 60 - 21일 이상 30일 이하 90 - 31일 이상 60일 이하 120 - 61일 이상 90일 이하 150 - 91일 이상 300  신고증명서 미게시, 미제시 신고증명서 분실, 멸실시 1개월이내 재발급 미신청	30		
	장부(서류) 미기록·부실기재	시정 명령	정지		신고증명서 분실, 멸실시 1개월이내 재발급 미신청	50	100	200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 1월	말소		장부(서류) 미기록·부실기재	50	100	200



# 과태료의 부과금액 (아청법 제67조, 시행령 제40조 관련)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 반
나.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 제4항	300	300	300
다.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1호	300	600	1,000
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3항	300	400	500
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600	800	1,000

# 과태료의 부과금액 [아동복지법 제75조, 시행령 제58조 관련]

[별표 14] <개정 2016. 9. 22.>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 7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2	150	300
나. 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1호	500	1,000
다.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항	250	500
라.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2호	500	1,000
마.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2호	150	300
바.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3호	150	300
사.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4호	150	300

[별지 제4호서식]

## 교습비등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단위: 원]

교습 과정	총교습시간 (분/월)	교습비	징수단위 (월,분기)	기타경비						합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운영자(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1. 교습비등 게시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한 최종자료를 게시합니다.
2.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3. 게시는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장소(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 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학원강사 게시표

일련 번호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학력 (전공과목)	경력	년      월      일 현재	
							소지 자격증	채용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1. 매월 1일 현재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합니다.
2. 학력은 고졸, 대졸 또는 대학원졸로 표시하되, 전공과목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3. 글씨의 크기는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크기로 합니다.
4.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 출입구 및 교습비등의 남부 장소 앞)

210mm×297mm[백상지(150g/㎡)]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div>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 <div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div>				

###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div>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 <div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div>				

210mm×297mm[백상지 80g/㎡]